



의안번호	제70호
------	------

<b>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b>
------------------------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5. 17.

#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0호
------	------

제출연월일 : 2021. 5. 17.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의거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급식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안내(안 제2조 ~ 제4조)
- 다. 급식지원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안 제5조 ~ 제8조)
- 라.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

연번	개선의견	반영계획
1	<b>제10조(위원회 구성)</b>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u>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제)</u>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 시 적극적으로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음. <b>제10조(위원회 구성)</b>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3. 23. ~ 2021. 4. 16.(24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출산보육정책과

##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논산시 거주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식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자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충남형온종일돌봄

센터, 논산형 학교돌봄터 등 돌봄을 목적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 아동급식가맹업체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 제공을 위해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이·통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 및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2. 주민생활지원과장
3. 학부모 대표
4. 교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공무원
5. 아동복지시설종사자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논산시지부,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아동 급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아동급식지킴이)**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통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논산시민

**제19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던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9조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년으로 한다.

제4조(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배 자
	아 동 친 화 팀 장	김 윤 희 (746-5371)

[별지 제1호서식]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 초 [ ] 중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 초 [ ] 중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아동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input type="checkbox"/>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사·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연 중                    :            [ ] 조식 [ ] 중식 [ ] 석식 <input type="checkbox"/> 학기 중 평 일            :            [ ] 조식                    [ ] 석식 토·공휴일 :            [ ] 조식 [ ] 중식 [ ] 석식 <input type="checkbox"/> 방학 중                    :            [ ] 조식 [ ] 중식 [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input type="checkbox"/>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식품권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	----	---------	------

지원결정 대상	성명	생년월일	급식제공기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급식지원 유형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급식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문의전화번호 :

성명

논산시장

직인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아동 급식지원 및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 관련 조문 : 안 제3조(급식지원 방법), 안 제17조(수당)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아동 급식지원 및 아동급식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991,400	1,189,400	1,189,400	1,189,400	1,189,400	5,749,000
산출 기초	아 동 급식지원	5천원×900명×220식 = 990,000	6천원×900명×220식 = 1,188,000	6천원×900명×220식 = 1,188,000	6천원×900명×220식 = 1,188,000	6천원×900명×220식 = 1,188,000	5,742,000
	위 원 회 참석수당	100천원×7명×2회 = 1,400	100천원×7명×2회 = 1,400	100천원×7명×2회 = 1,400	100천원×7명×2회 = 1,400	100천원×7명×2회 = 1,400	7,000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계		991,400	1,189,400	1,189,400	1,189,400	1,189,400	5,749,000
도비		334,300	417,000	417,000	417,000	417,000	2,002,300
시비		657,100	772,400	772,400	772,400	772,400	3,746,700

**3.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김 배 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b>세 입</b>	991,400	1,189,400	1,189,400	1,189,400	1,189,400	<b>5,749,000</b>	
도 비	334,300	417,000	417,000	417,000	417,000	2,002,300	
시 비	657,100	772,400	772,400	772,400	772,400	3,746,700	
<b>세 출</b>	991,400	1,189,400	1,189,400	1,189,400	1,189,400	<b>5,749,000</b>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990,000	1,188,000	1,188,000	1,188,000	1,188,000	5,742,000	
<b>재원 조달</b>	991,400	1,189,400	1,189,400	1,189,400	1,189,400	<b>5,749,000</b>	
의존 재원	소 계	334,300	417,000	417,000	417,000	417,000	2,002,300
	보조금	334,300	417,000	417,000	417,000	417,000	2,002,3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57,100	772,400	772,400	772,400	772,400	3,746,700
	지방세	657,100	772,400	772,400	772,400	772,400	3,746,700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서비스
2.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3.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급식지원,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관리 서비스**

4.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비만 방지, 기초체력 측정, 신체활동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